

## 農家類型別 老後準備實態分析\*

李 永 大\*\*  
鄭 明 采\*\*\*

- I. 序論
- II. 農家人口의 老齡化와 老後準備의 重要性
- III. 農家類型別 老後準備實態
- IV. 分析結果와 政策의 含蓄性

### I. 序論

1988년 1월부터 우리 나라에도 國民年金制度가 실시되게 되었다. 우선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만을 當然適用으로 하여 老後, 장해, 사망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10人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와 農漁民 등의 自營業者는 任意加入으로 되어 있어 당사자가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國民年金制度에 의하여 農漁民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標準月所得의 3% 中 1.5%만 本人負擔이나 農漁民은 3% 全

額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8년 3월 말 현재 직장인의 국민연금가입자는 4,216千명인데 반해 農漁民 가입자는 450명뿐(中央日報 1988. 4. 9)으로 農漁民의 가입은 극히 저조하다.

이에 따라 保健社會部와 農林水產部에서는 農漁民에게 年金惠澤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保健社會部는 1988년 大統領業務報告時 農漁民을 義務加入者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今年中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農林水產部는 농어민만을 대상으로 한 농어민연금제도의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있다(農林水產部, 1988).

이러한 상황에서 農漁民을 위한 年金制度樹立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農民의 老後準備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특히 새로운 農政 戰略의 하나로 여겨지는 農家類型別 育成(21世紀 農政企劃班, 1987)에 따라 農家類型別로 老後準備實態를 밝혀 각 農家類型別 年金制度 實施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진다.

本研究는 農家類型別 老後準備實態를 분석하여 各類型別로 적당한 年金制度方案을 제시하는

\* 本稿는 「農漁民年金 및 社會保險制度」,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159의 내용中 老後準備實態 부분을 재구성·보완한 것임.

\*\* 研究員.

\*\*\* 責任研究員.

表 1 年齡別 農家人口 推移

單位：千名， %

	計	13세 이하	14~19	20~49	50~59	60세 이상
1960	14,559(100.0)	6,162(42.3)	1,769(12.1)	4,480(30.8)	1,466(10.1)	682( 4.7)
1965	15,812( " )	6,769(42.8)	1,705(10.8)	5,238(33.1)	1,476( 9.3)	623( 4.0)
1970	14,422( " )	6,271(43.5)	1,470(10.4)	4,404(30.5)	1,107( 7.7)	1,143( 7.9)
1975	13,244( " )	4,780(36.5)	1,980(14.9)	4,212(31.8)	1,108( 8.4)	1,164( 8.8)
1980	10,827( " )	3,230(29.8)	1,684(15.6)	3,701(34.2)	1,074( 9.9)	1,138(10.5)
1985 <sup>1)</sup>	8,521( " )	2,114(24.8)	1,271(14.9)	2,830(33.2)	1,129(12.5)	1,177(13.8)
1990 <sup>2)</sup>	7,610( " )	1,665(21.9)	804(10.6)	2,896(38.1)	1,084(14.2)	1,161(15.3)
2000 <sup>2)</sup>	5,299( " )	1,280(24.2)	320( 6.0)	1,906(36.0)	604(11.4)	1,189(22.4)

資料：1) 1960~85년은 農水產部, 「農林統計年報」各年度。

2) 韓國農村經濟研究院,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農業部門」, 1986.

에 目的을 두고 이루어졌다. 各農家類型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987년 4월 全國 3개 郡, 3개 面, 88개 부락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各類型別 老後準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53호의 농가에 대한 面接調查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 II. 農家人口의 老齡化와 老後準備의 重要性

### 1. 農家人口의 老齡化

우리 나라의 農家人口는 계속 크게 감소하고 있다. 즉, 〈表 1〉과 같이 지난 1965년 15,812千명에서 1975년 13,244千명, 1985년 8,521千명으로 農家人口가 감소하였다. 이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1990년에 7,610千명, 2000년에 5,299千명으로 감소하리라 예상되어진다.

그러나 農家人口 가운데 高齡人口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커지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 4.7%, 1970년 7.9%, 1980년 10.5%, 1990년 15.3% (추정), 2000년 22.4% (추정)로 매우 높다. 50세 이상 인구로는 1960년 14.8%, 1980년 20.4%, 2000년 33.8%

(추정)로 매우 높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15~64세로 나눈 값을 老年扶養比라고 하며 〈表 2〉와 같이 1970년에 農家가 9.9, 非農家가 2.7, 1980년에 농가가 11.2, 비농가가 4.2로 농가가 비농가에 비해 높았다. 이 경향은 앞으로 계속되어 2000년에 가면 농가가 비농가보다 3배 가량의 노인부양 부담과 증현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값을 老齡化指數라고 하며 이것 또한 농가가 비농가에 비하여 높으며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다.

농가인구의 高齡화는 196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農家人口의 高齡화는 青壯年層의 계속적 離農, 平均壽命의 延長, 出產力의 변동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都市產業 발전에 따라 農家 青壯年層이 계속적으로 離農하였다.

〈表 3〉은 年齡階層別 總離農量을 年齡別로 나타낸 것인데 1970~75년에는 41세 층까지 離農하고 42세 이상은 歸農하였다. 1975~80년에는 51세 층까지 離農이 일어나고 52세 이상 高齡者는 歸農現象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는

表 2 農家와 非農家の 老年扶養比 및 老齡化指數<sup>1)</sup>

單位：千名， %

	農 家 <sup>2)</sup>					非 農 家 <sup>3)</sup>					全 體 <sup>4)</sup>				
	0~14세 (A)	15~64세 (B)	65세~ (C)	C/B	C/A	0~14세 (A)	15~64세 (B)	65세~ (C)	C/B	C/A	0~14세 (A)	15~64세 (B)	65세~ (C)	C/B	C/A
1970	6,518	7,191	713	9.9	10.9	7,191	10,349	278	2.7	3.9	13,709	17,540	991	5.7	7.2
1980	3,230	6,869	728	11.2	20.4	9,721	16,848	728	4.3	7.5	12,951	23,717	1,456	6.1	11.2
1990	1,524	5,348	759	14.2	49.8	10,981	24,190	1,315	5.4	12.0	12,505	29,538	2,074	7.0	16.6
2000	1,191	3,312	796	24.0	66.8	11,196	30,622	2,238	7.3	20.0	12,387	33,934	3,034	8.9	24.5

1) 老年扶養比=65세 이상 인구÷ 15~64세 인구, 老齡化指數=65세 이상 인구÷ 0~14세 인구.

2) 農家는 농수산부 농업센서스, 1970, 1980 자료와 韓國農村經濟研究院「2000年을 향한 국가장기 발전구상—농업부문」, 1986, p. 130에서 이용.

3) 非農家=全體—農家.

4) 全體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 「2000年을 향한 국가장기 발전구상—인구 및 보건의료 부문」, 1985, p. 33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表 3 年齡階層別 總離農量 推移

단위：千名

年齡階層	1970~75	1975~80	1980~85
17 ~ 21	199.8	385.8	164.2
22 ~ 26	239.5	307.1	266.8
27 ~ 31	134.2	167.3	95.7
32 ~ 36	67.3	98.0	73.0
37 ~ 41	76.4	80.8	72.8
42 ~ 46	-20.3	44.5	74.2
47 ~ 51	-13.6	25.9	23.6
52 ~ 56	-58.1	-30.7	0.0
57 ~ 61	-47.6	-4.3	0.4
62세이상			15.6
計	577.6	1,074.4	786.3

자료：李貞煥外, 「農業部門 長期人力需給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126, 1986 p. 12

全年齡層의 離農現象이 일어나고 다만 52~61세까지는 정체현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1970년 이후 1985년까지 15년 동안 農家人口가 감소하는 경향 속에서도 40세 이하의 청장년층의 離農이 많았던 것이다. 반면 40代 이후에는 離農者보다 歸農者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52세 이상의 高齡者의 歸農이 많아 農家人口의 高齡화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生活水準의 향상과 의료, 과학기술의 발달은 死亡率을 크게 저하시키고 인간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켰다. 먼저 死亡率 감소를 보면 年間死亡者數를 연간 推計人口로 나눈 組死亡率(Crude

Death Rate)이 인구 1,000명 당 1971년 10.6명에서 1987년 6.0명으로 감소하였다(經濟企劃院, 1987).

우리나라 사람들의 平均壽命도 1950~55년 남자 48.3세, 여자 53.9세였으나, 1960~65년 남자 54.9세, 여자 61.0세, 1970~75년 남자 59.8세, 여자 66.7세로 향상되었으며(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1980~85년 남자 65.3세, 여자 71.8세로 나타났다(經濟企劃院 1987). 이러한 국민들의 平均壽命 연장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000년에 가면 국민 평균수명이 72.6세로 증가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4).

최근政府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온 家族計劃事業의 결과는 農家の 出產率을 크게 떨어뜨려 상대적으로 高齡人口의 비율을 크게 하고 있다. 가족계획실천율은 1970년만 하여도 24.0%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에는 71.4%로 높아졌으며(經濟企劃院, 1987), 특히 農村의 家族計劃 실천율이 1975년 40.2%에서 1983년 55.5%로 높아졌다(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4). 그에 따라 出產力이 감소하여 1,000명 당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60년 6.0명에서 1982년에는 2.1명으로 감소하고 있었다(韓國社會學會, 1983).

## 2. 農家人口의 老後準備의 重要性

앞에서 살펴본 農家人口의 老齡化에 비추어 그들의 老後生活은 매우 길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老後準備 또한 중요해진다.

더구나 農家는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청장년층의 이동, 가족주의의 쇠퇴, 분산 및 핵가족의 증가, 전통적 가족관계 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農家 老齡人口에 대한 社會的 保護와 情緒的 支持機能이라는 家族이 갖는 본연의 기능이 매우 약해졌다.

먼저 農家 家口員의 老人扶養에 관한 意識을 보면 崔在錫의 조사(1970)에서는 長男이 66.2%로 가장 높았으며 자식들 전부가 21.4%였으며 崔順男의 조사(1982)에서는 農家老人 부양이 자식의 전적인 책임이다 38.6%,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다 2.8%, 자식이 책임지고 정부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가 58.6%로 나타나 全國的 調查(經濟企劃院, 1987)의 장남 22.1%, 아들 모두 21.7%, 딸 0.8%, 아들 딸 모두 27.1%, 자립 20.5%, 사회 및 기타의 7.8%와 차이가 나고 있었다. 즉, 農村老人 부양에 대하여 子女가 부양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자립과 사회 및 기타 의견은 낮았다.

이렇게 農村 子女들의 老人扶養에 대한 意識 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農村老人들의 子女와의 同居에 대한 의식 또한 변화하였다. 崔在錫의 조사(1970)에서 子女와 따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1.8%로 비교적 높았으나 실제 자신들이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 7.9%에 불과하였다. 子女와 별거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여 理想과 現實의 차이가 있다.

農村의 젊은 층의 異農과 의식의 변화로 農村

老人들이 子女와 기타 다른 家族과 동거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老人 부부만 살거나 심지어老人 혼자 사는 경우도 많다. 慶北大學校 동양문화연구소의 조사(1980)에서 부부동거가 16.5%, 獨居가 6.4%이며 崔順男의 조사(1982)에서는 자녀로부터 독립이 27.4%이며 林鍾權등의 조사(1985)에서는 老人單獨世帶가 25.3%나 되었다.

이같이 農村老人들만으로 家庭을 이루는 이유로는 子女가 직장관계로 부모 곁을 떠나기 때문이 많았다. 林鍾權 등의 조사(1985)에서는 農村老人들이 子女와 별거하는 이유는 자녀의 직장관계가 58.9%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이 원해서가 22.1%, 자녀가 원해서 9.6%, 자녀와의 불화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農村老人들이 子女로부터 扶養을 받지 못함으로써 정서적, 서비스, 경제적 부양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經濟問題는 農村老人들의 큰 걱정거리의 하나다.

<表 4>는 60세 이상 農家人口의 就業別 상태를 나타낸 것인데 農業主從事가 53.0%, 兼業主從事가 1.2%, 家事が 18.0%, 其他가 27.8%로 農業從事가 많았다. 그 가운데서도 年齡이 낮은男子일수록 農業就業이 많았다. 60~64세 남자 의경우 94.7%가 농업에 종사하며 70세 이상 男子의 59.4%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3개面 88개 부락 4,967호 농가를 분석한 <그림 1>과 같이 전체 農家の 19.9%는 60세 이상老人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 비율은 1985년 전국 농가 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이 24.4%(農水產部, 1986)보다는 약간 적은 편이나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들 高齡人口가 경영하는 農家는 勞動生產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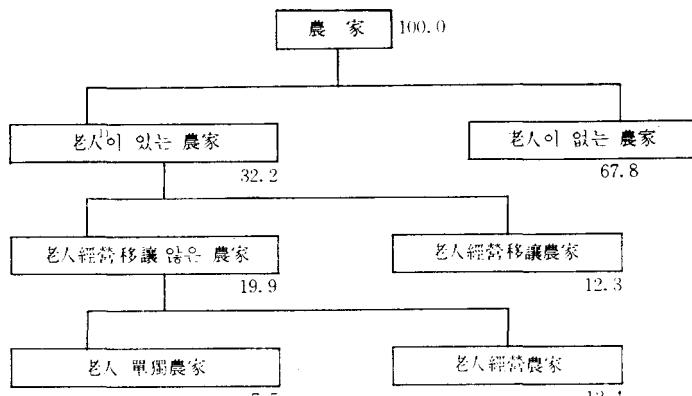
表 4 60세 이상 農家人口의 就業別狀態, 1980

單位: 名, %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農業	190,932	90,220	281,152	127,162	55,911	183,073	96,775	42,445	139,230	414,869	188,586	603,455
主從事	(94.7)	(43.2)	(68.5)	(89.5)	(35.6)	(61.2)	(59.4)	(16.0)	(32.5)	(81.9)	(29.9)	(53.0)
兼業	4,678	2,818	7,496	2,252	1,612	3,864	1,334	1,076	2,410	8,264	5,506	13,770
主從事	(2.3)	(1.3)	(1.8)	(1.6)	(1.0)	(1.3)	(0.8)	(0.4)	(0.6)	(1.6)	(0.9)	(1.2)
家事	—	92,511	92,511	—	61,898	61,898	—	50,561	50,561	—	204,970	204,970
其他	6,009	23,208	29,217	12,698	37,614	50,312	64,727	171,582	236,309	83,434	232,404	315,838
計	201,619	208,757	410,376	142,112	157,035	299,147	162,836	265,674	428,510	506,567	631,466	1,138,033
	(100.0)	(99.9)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100.0)

資料, 農水省, 「1980. 農業セン서스」。

그림 1 調査對象 3個面의 農家類型別 分布(%)



1) 老人은 60세 이상을 나타냄.

經營의 效率性, 技術 受容性이 저하되고 있다. 또 노동력 부족으로 기계화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수용력의 부족으로 농기계로 인한 障碍頻發 및 機械의 效率性이 저하되고 있다. 金沄根 등의 조사(1985)에 의하면 農家經營主가 高齡일수록 農機械 保有數가 적었는데 30~39세 가 戶당 1.60대이나 60~64세는 호당 1.1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老齡人口가 경영하는 農家는 젊은이들이 경영하는 農家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生活水準이 낮은 편이었다. <表 5>는 調査對象 地域 農가의

類型別 生活水準을 나타낸 것인데 노인만 있는 세대와 老人經營家口는 老人經營移讓家口와 젊은이만 사는 가구에 비하여 生活水準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老齡人口가 經營을 담당하는 農家의 生活水準이 낮은 즉, 貧困의 이유로는 <表 6>과 같이 老齡이 가장 큰 이유였다. 즉, 노인단독세대의 35.3%와 노인 경영권 이양전인 가구의 27.3%가 老齡을 貧困의 원인으로 들고 있었다. 老齡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소득의 단절을 가져오며 또 老齡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아 빈곤하다.

表 5 農家類型別 部落內 生活水準<sup>1)</sup>

單位：名，%

	上	中	下	計
老人單獨農家	52(16.7)	131(42.0)	129(41.3)	312(100.0)
老人經營農家	140(16.8)	380(45.6)	313(37.6)	833(100.0)
老人經營移讓農家	121(23.8)	227(44.7)	160(31.5)	508(100.0)
老人이 없는農家	755(39.6)	686(36.0)	466(24.0)	1,907(100.0)
計	1,068(30.0)	1,424(40.0)	1,068(30.0)	3,560(100.0)

1) 部落內 生活水準은 上, 中, 下를 30%, 40%, 30% 비율로 분할한 것임.

表 6 農家類型別 貧困의 원인

單位：名，%

	家口主死	疾病	不具	老齡	各種事故	負債	無職·無技術	事業失敗	食口가 많아서	遺産이 없어서	教育費過多支出	飲酒·賭博	其他	計
老人單獨農家	4 (11.8)	3 (8.8)	0 (0.0)	12 (35.3)	3 (8.8)	2 (5.9)	2 (5.9)	0 (0.0)	3 (8.8)	0 (0.0)	1 (2.9)	0 (0.0)	4 (11.7)	34 (100.0)
老人經營農家	3 (6.8)	8 (18.2)	0 (0.0)	12 (27.3)	1 (2.3)	9 (20.5)	3 (6.8)	1 (2.3)	2 (4.6)	2 (4.6)	1 (2.3)	0 (0.0)	2 (4.6)	44 (100.0)
老人經營移讓農家	1 (2.9)	7 (20.6)	0 (0.0)	1 (2.9)	7 (20.6)	10 (29.4)	2 (5.9)	0 (0.0)	1 (2.9)	2 (5.9)	0 (0.0)	1 (2.9)	2 (5.9)	34 (100.0)
老人이 없는農家	0 (0.0)	5 (11.9)	1 (2.4)	1 (2.4)	11 (26.2)	13 (30.9)	3 (7.1)	1 (2.4)	4 (9.5)	1 (2.4)	1 (2.4)	0 (0.0)	1 (2.4)	42 (100.0)
計	8 (5.2)	23 (14.9)	1 (0.7)	26 (16.9)	22 (14.3)	34 (22.1)	10 (0.5)	2 (1.3)	10 (6.5)	5 (3.3)	3 (1.9)	1 (0.7)	9 (5.8)	154 (100.0)

이 밖에 農家老齡人口는 農村生活環境에 오랫동안 적응되어 都市에 移住하기에도 곤란한 상태에 있어 그들의 老後生活問題는 중요하다 하겠다.

### III. 農家類型別 老後準備實態

#### 1. 農家人口의 老後準備與否

農家人口의 老後生活 준비 여부는 <表 7>과 같다. 調查對象 農家の 3.9%만이 충분히 해놓았으며 24.7%는 어느 정도 해놓았다고 28.6%만이 老後生活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머지 19.5%는 생각 중이며, 51.9%는 전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었다.

家口形態別로 보면 老人單獨家口가 老後準備

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젊은이만 사는 가구, 老人經營權 移讓前인 家口, 老人經營權 移讓後인 家口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老後準備를 충분히 해놓았다와 어느 정도 했다를 합쳐 老人單獨家口가 38.3%, 젊은이만 사는 家口의 33.4%, 老人經營 移讓前인 家口 25.1%, 老人經營 移讓後인 家口 17.7%였다.

그런데 노인들만이 사는 家口의 52.9%가 아직도 뚜렷한 老後準備를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子女들이 向都離村하여 老人們만이 農家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老後準備마저 없는 것은 현재의 생활 자체도 문제가 될뿐 이려니와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밖의 特性別로 老後準備 실태를 보면 年齡이 높을수록, 學歷이 높을수록, 家族數가 적을수록, 所有農地가 둘수록, 生活水準이 높을수록 老

表 7 農家類型別 老後準備實態

單位：名，%

	충분히 해놓았다	어느정도 해놓았다	생각중이다	못해놓았다	計
老人單獨農家	2(5.9)	11(32.4)	3(8.8)	4(52.9)	34(100.0)
老人經營農家	2(4.6)	9(20.5)	9(20.5)	24(54.4)	44(100.0)
老人經營移讓農家	0(0.0)	6(17.7)	14(41.2)	14(41.1)	34(100.0)
老人이없는農家	2(4.8)	12(28.6)	4(9.5)	24(57.1)	42(100.0)
計	6(3.9)	38(24.7)	30(19.5)	80(51.9)	154(100.0)

表 8 農家類型別 老後準備方法

單位：名，%

	貯蓄	不動產買入	農地賃貸	退職金	老齡年金	其 他	計
老人單獨農家	1(7.7)	3(23.1)	6(46.2)	2(15.4)	0(0.0)	1(7.7)	13(100.0)
老人經營農家	2(18.2)	3(27.3)	6(54.5)	0(0.0)	0(0.0)	0(0.0)	11(100.0)
老人經營移讓農家	2(33.3)	2(33.3)	0(0.0)	1(16.7)	1(16.7)	0(0.0)	6(100.0)
老人이없는農家	5(35.7)	6(42.9)	1(7.1)	2(14.3)	0(0.0)	0(0.0)	14(100.0)
計	10(22.7)	14(31.8)	13(29.5)	5(11.4)	1(2.3)	1(2.3)	44(100.0)

後準備를 많이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老人們은 公的年金에 주로 의존하는 外國의 老人們과 달리 子女에게 老後生活(특히 所得源)을 의존하고 있어 老後準備 정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에 따라 1983년 사회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불과 30.8%만이 老後準備를 하고 있었다(經濟企劃院, 1986). 이것은 本調查 農家の 28.6%가 老後準備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약간 높은 편이다. 그러나 本調查는 農家를 類型別로 구분하여 老後準備 실태를 조사한 것이므로 전체 농가를 대표할 수 없어 비교가 어렵다.

## 2. 老後準備를 한 農家 家長의 老後準備方法

이미 앞에서 調查 農家の 28.6%가 어떤 형태로든 老後準備를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老後準備를 하고 있는가? 全國調查 結果 보험이 19.8%, 직급이 39.0%, 계가 14.6%, 연금이 8.8%, 기타 17.9%이며(經濟企劃院, 1986), 本調查 결과는 表 8과

같다.

表 8과 같이 부동산 매입이 31.8%로 가장 많았으며 農地賃貸가 29.5%, 저축이 22.7%, 퇴직금이 11.4%의 순이며 老齡年金이나 保險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農家는 2.3%에 불과하였다.

全國的 調査와 비교하여 부동산매입이나 農地賃貸가 매우 많았으며 보험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이것은 農家經營上의 특징인 農地(土地)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農地賃貸가 많은 것 같았고 농민은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年金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例 公務員, 私立學校 教員)들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어 全國調查에서는 年金 의존이 높은 것 같았다.

農家類型別로 보면 老人單獨家口나 老人經營權移讓前인 가구는 農地賃貸가 가장 많았으며 老人經營權移讓 후인 가구와 젊은이만 사는 가구는 저축과 부동산 구입이 높았다.

다른 特性別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동산 구

表 9 農家類型別 老後準備 時作 年齡

單位：名，%

	40세 이전	40~49	50~59	60세 이상	計
老人單獨農家	2(16.7)	2(16.7)	1( 8.3)	7(58.3)	12(100.0)
老人經營農家	0( 0.0)	2(33.3)	1(16.7)	3(50.0)	6(100.0)
老人經營移讓農家	4(66.7)	1(16.7)	1(16.7)	0( 0.0)	6(100.1)
老人이 없는農家	6(50.0)	2(16.7)	3(25.0)	1( 8.3)	12(100.0)
計	12(33.3)	7(19.4)	6(16.7)	11(30.6)	36(100.0)

입이 많았으며 60세 이상 인구는 農地貨貸를 老後準備 방법으로 택하고 있었다. 學歷別로는 學歷이 높을수록 저축을 많이, 農地貨貸를 적게 준비하고 있었다. 家族員數別로는 가족 수가 적을수록 農地貨貸가 감소하며, 所有農地규모가 클수록 저축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生活水準이 높을수록 農地貨貸가 높았다.

여기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老人單獨家口와 老人經營權移讓前인 家口, 60세 이상 農家の家長이 農地貨貸를 老後準備方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農家는 營農後繼者를 확보하지 못한채 老齡으로 農業經營을 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없이 農地貨貸를 老後準備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들 農家の 農地貨貸方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老齡農民의 老後準備를 보다 원활히 하고 農業構造改善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하여야겠다.

老後準備를 하고 있는 農家는 언제부터 老後準備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을까에 관하여 調査한結果는 〈表 9〉와 같다.

老人單獨家口와 老人經營主 家口는 60세 이상에서부터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老人經營移讓 가구와 老인이 없는 가구는 40세 이전부터 老後準備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學歷이 높을수록, 家族數가 많을수록, 所有農地規模가 클수록, 부락내의 生活水準이 높을수록 老後準備를 일찍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이것은 결국 앞의 노후준비 여부와 관련하여 學歷이 낮고, 所有農地規模가 적고, 生活水準이 낮을수록 老後準備 시기가 늦거나 아예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 3. 老後準備를 못한 農家の 경우

調查對象農家の 51.9%가 노후준비를 못하였으며 19.5%는 노후준비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나타난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들 農家는 왜 老後準備를 못하였는가? 그 것을 조사한結果는 〈表 10〉과 같은데 低所得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子女教育費 過多支出이 37.3%가 그 다음으로 이 두 가지가 81%나 차지하여 매우 높았다. 그밖에 子女分家가 9.1%, 방법이 없어서가 4.5%, 疾病·事故가 3.6%, 인플레가 1.8%로 각각 나타났다.

農家類型別로는 노인단독가구와 노인경영주가구는 低所得이 가장 높았으며 老人經營移讓家口와 老인이 없는 가구는 教育費 過多支出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老人單獨家口의 24.0%는 老後準備를 못한 이유로 子女分家를 들고 있었다. 子女와 동거함으로써 老後生活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子女가 分家함으로써 老後準備도 못한 채 노인들만으로서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老後準備를 못하고 있는 이들도 老後準備를 어떤 형태로든 하여야 하고 또 실제로 희망하고 있

表 10 農家類型別 老後準備 못한 理由

單位：名，%

	教育費過多支出	子女分家	疾病·事故	低所得	인플레	方法이 없어서	計
老人單獨農家	7(26.9)	6(23.1)	1(3.8)	12(46.2)	0( 0.0)	0( 0.0)	26(100.0)
老人經營農家	10(30.3)	2( 6.1)	3(9.1)	17(51.5)	0( 0.0)	1( 3.0)	33(100.0)
老人經營移讓農家	9(37.5)	2( 8.4)	0(0.0)	9(37.5)	1( 4.2)	3(12.5)	24(100.0)
老人이 없는農家	15(55.6)	0( 0.0)	0(0.0)	10(37.0)	1( 3.7)	1( 3.7)	27(100.0)
計	41(37.3)	10( 9.1)	4( 3.6)	48(43.7)	2(1.8)	5( 4.5)	110(100.0)

表 11 農家類型別 希望하는 老後準備方法

單位：名，%

	貯蓄	不動產 買入	農地賃貸	가계·住宅 賃貸	退職金	老齡年金	貯蓄+年金	其 他	計
老人單獨農家	15(44.1)	15(14.7)	6(17.6)	0(0.0)	0(0.0)	5(14.0)	3(8.8)	0(0.0)	34( 99.9)
老人經營農家	18(40.9)	4( 9.1)	7(15.9)	1(2.3)	0(0.0)	11(25.0)	1(2.3)	2(4.5)	44(100.0)
老人經營移讓農家	15(44.1)	5(14.7)	3( 8.8)	1(2.9)	0(0.0)	9(26.5)	1(2.9)	0(0.0)	34( 99.9)
老人이 없는農家	20(47.6)	7(16.7)	5(11.9)	1(2.4)	2(4.8)	5(11.9)	2(4.8)	0(0.0)	42(100.1)
計	68(44.2)	21(13.6)	21(13.6)	3(1.9)	2(1.3)	30(19.5)	7(4.5)	2(1.3)	154( 99.9)

表 12 農家類型別 希望하는 老後準備時作年齢

單位：名，%

	40歳以下	41~50歳	51~60歳	61歳以上	計
老人單獨農家	0(0.0)	0( 0.0)	0( 0.0)	6(100.0)	6(100.0)
老人經營農家	1(7.7)	1( 7.7)	2(15.4)	9( 69.2)	13(100.0)
老人經營移讓農家	0(0.0)	3(21.4)	5(35.7)	6( 42.9)	14(100.0)
老人이 없는農家	0(0.0)	0( 0.0)	7(43.7)	9( 56.3)	16(100.0)
計	1(2.0)	4( 8.2)	14(28.6)	30(61.2)	49(100.0)

었다. 農家の 家口形態別 희망하는 老後準備方  
法은 <表 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저축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老  
齡年金이나 保險도 20.4%나 되었으며 부동산 매  
입이 14.3%, 農地賃貸가 각각 14.3%였으며 그  
밖에 가계·주택임대가 2.0%, 퇴직금이 1.4%,  
기타가 1.4%였다.

家族形態別로는 老人單獨家口의 16.1%, 老人  
經營主家口의 25.6%, 老人經營移讓家口의 27.3

%, 노인 없는 가구의 12.5%가 老人年金에 의  
한 老後準備를 하고 있었다. 또 老人單獨家口의  
19.4%, 老人經營主家口의 16.3%, 老人經營移  
讓家口의 9.1%, 노인 없는 가구의 12.5%가 農

地賃貸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農  
家類型과 관계없이 저축에 의한 老後準備를 가  
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또 老後準備를 못한 경우의 희망하는 노후  
준비 시작 시기를 알아본 결과는 <表 12>와 같  
이 老人單獨家口와 老人經營主 가구는 60세 이  
상이 가장 많았으며 老人經營移讓家口와 노인없  
는 가구는 40세 이전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하려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學歷이 낮을수록, 가족 수가 적을수록, 農地  
所有規模가 적을수록, 부락내의 生活水準이 낮  
을수록 노후준비시작 연령이 높았다.

## IV. 分析結果와 政策的 含蓄性

이상에서 農家 類型別 老後準備 실태를 분석하였다. 農家人口는 급격하게 高齡化되어 있고 이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예상되어진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經濟成長과 都市產業 發展에 따라 農家の 青壯年層이 離農을 하고 生活水準의 향상과 의료,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死亡率의 저하와 그에 따른 인간의 수명 연장, 정부의 적극적인 家族計劃 실천에 따라 農家 老齡人口가 증가하고 비율에서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農家の 老後準備가 중요한 것은 農家構成員과 意識의 변화로 인하여 자녀로부터 扶養을 받는 노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노인 부부만 살거나 심지어는 노인 1명만이 외롭게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農家 老齡人口의 經濟實態를 보면 아직도 農業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農家經營主의 19.9%는 60세 이상이었다. 이러한 高齡人口가 경영하는 농가는 젊은이들이 경영하는 農家에 비하여 勞動生產性, 經營의 效率性, 技術受容性이 뒤떨어져 部落內 生活水準이 낮은 편이었다.

農家の 老齡人口는 子女教育費支出, 子女分家 등 자녀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수함에 따라 또 저소득에 따라 老後準備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즉, 子女에게 老後扶養을 의존하려고 하였으나 子女들은 직장관계로 도시로 나가 살고 農家에는 老人們만이 살고 있는 경우가 상당 비율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公的年金에 주로 의존하는 外國의 老人們과 달리 우리나라 農家 老人们的 老後準備方法으로 부

동산 매입(주로 農地임)과 農地賃貸가 많아 농지가 주요한 老後準備 수단으로 나타났으며 年金에 의존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특히 老人單獨農家와 老人經營農家는 이 방법에 의존하여 老後準備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老後準備를 하지 못하고 있는 農家들의 희망하는 방법으로 老齡年金이 19.5%에 불과하였으며 老後準備를 시작한 시기도 늦은 편이었다.

農家 類型別 老後準備實態를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農家老齡人口의 福祉增進方案을 위한 政策的 含蓄은 무엇인가?

現代社會가 老齡問題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각종 老齡保障 형태를 분류해 보면 物質的老齡保障, 老人健康保障, 老人住居保障, 社會心理的保障, 老人保護施設의 居宅保障이 있다(鄭明采外, 1987).

우리나라의 경우 물질적 老齡保障의 主宗을 이루는 年金制度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農民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健康保障은 醫療保險 실시 이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의료보험의 老齡支援對策이 미흡한 수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生活保護法, 社會福祉事業法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低所得層을 대상으로 하여 施設保護, 居宅保護 등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施設保護事業은 양로시설에 無依無托老人을 대상으로 生計 및 施設運營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居宅保護事業은 扶養責任者가 없고 生活能力이 부족한 在家老人(거액보호자)을 대상으로 그 생계를 도와주는 것이다.

農家老齡人口 가운데 老後準備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는 居宅保護에 해당된다고 보겠는데 1987년의 경우 295,000명을 대상으로 白米, 精麥, 副食費, 燃料費, 教育費, 醫療費등 매월 27,

300원을 지원하여 最低生計費인 43,000원의 63.5%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保健社會部, 1987).

19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농가노령인구도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각종 생활 보호 대상자와 低所得層을 위한 醫療保護의 실시로 65세 이상 老人중 약 13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保健社會部, 1987). 또 老人福祉法 제8조에 의거 老人健康診斷을 실시하고 있다.

老人住居보장은 은퇴 후의 주택보장, 노인의 주거환경보장, 노인가정생활보호가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약하며 사회심리적보장으로 퇴직 후 활동의 보장, 소외·고립으로부터의 보호, 노동계속의 보장이 해당되는데 이 분야 또한 많은 노력이 기울이고 있음에도 아직 취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부터 敬老優待制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1,519千名(1986년)에게 철도, 이발 등 13개 업종에서 50~100% 할인하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老人 보호시설의 居宅보장을 보면 1986년 12월 현재 養老施設 64개, 老人療養施設 8개, 老人福祉會館 13개, 敬老堂 12,143개, 老人學校·老人教室이 758개가 설치되어 714,701명이 수용되거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都市地域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노인복지회관도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운영프로그램 또한 지도자 교육만 하는 정도이며 재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민간양로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층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또 노인정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조사대상 지역 3개면 88개 부락 가운데 14.8%인 13개 부락에만 경로당, 노인정, 노인회관 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農家 老齡人口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은 무엇일까?

먼저 農家の 老人扶養機能을 강화해야 한다. 노령인구 부양 농가에 稅制, 手當 등 혜택을 부여하고 전통적인 노인부양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農家老人에 대한 건강진료사업도 내실화하여 야겠고 농가노인을 위한 간병서비스 제도가 실시되어져야겠다.

또 農家 가운데 老人 단독 세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農家에 대하여 紿食, 家事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家庭奉仕員 제도 도입을 시도하여야겠다. 都市地域보다는 農村地域에 이 제도를 더 빨리 도입하여야겠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農家老人들도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겠으며 이 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 政府가 각 邑·面單位로 総合福祉館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데 무의탁 노령 농민에게 住食과 의료를 무료 혹은 연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그리고 老齡保障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는 年金制度는 農漁民의 특성을 감안하여 農業經營移讓促進, 農漁民後繼者育成 등 農業構造改善政策과 연계된 產業政策의 社會年金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老齡農民의 適期移讓促進이나 零細小農 등 장래성이 없는 경영자의 離農 장려연금제도의 도입은 농업의 발전과 農村老齡生活對策으로써 긴요한 것 같다. 한편 經營移讓後의 老齡農民活動을 위한 잔류지 허용, 農村老齡者 就業對策 또는 老齡者 활동의 場을 개발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7.
- 金沄根外 2人, 「高齡화 추세에 따른 農業構造 調整 및 制度改善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
- 農水產部, 「農業센서스」, 1980.
- \_\_\_\_\_, 「간이 농업센서스 1985」, 1986.
- 農林水產部, “農林水產業의 構造改善과 農漁民年金制 度 研究,” 1988.
- 保健社會部, 「保健社會」, 1987.
- 21世紀 農政企劃班, 「21世紀을 향한 農政과 새 戰略」, 1987.
- 李貞煥外, 「農業部門 長期人力需給에 관한 研究」, 韓 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 林鍾權外, 「韓國老人의 生活實態」, 韓國人口保健研究 院, 1985.
- 鄭明采外, 「農漁民年金 및 社會保險制度研究」, 韓國農 村經濟研究院, 1987.
- 中央日報, 1988. 4. 9.
- 崔順男, “家族構造의 變化에 따른 老人問題發生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社會福祉研究論文集」 제 2 칡,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982.
-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民衆書館, 1970.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 想-農業部門」, 1986.
- 韓國社會學會編, 「韓國社會어디로 가고 있는가」, 現代 社會研究所, 1983.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人口, 保健指標 및 統計」, 1984.
- \_\_\_\_\_,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人口 및 保健醫療部門」, 1985.